

KIPA 컬럼

物質特許 導入에 7年만에 一括 타결된

이번에 타결된 세부내용을 보면 特許期間은 公告日로부터 15年으로 하되 회복기간제도를 導入, 실용화검사기간의 불이익을 덜어주기위해 5年이내로 特許權 존속기간을 더해주는 기간회복제도를 導入키로 했다.

微生物特許는 法改正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로 하여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는데 美 제넨텍(GENENTEC)社가 人間성장호르몬 등 4건을 製法特許로 出願, 계류중이다. 이와 관련 부다페스트條約에도 加入키로 했다.

계류중인 特許出願의 補正은 현재 약 3천건의 계류중인 特許出願 가운데 제3국의 漁父之利를 막기 위해 쌍무협정으로 美國것 1천건 정도(이중 物質特許가능은 3분의 1 정도)를 9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해 인정키로 했다고 한다.

未市販제품 保護는 美측이 막바지까지 요구해온 것으로 80年 1月 1日 이후 特許분에 한해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정지도로 保護해 주기로 했다고 한다.

어느 정도 예상해왔던 일이지는 하지만 미치 수용태세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物質特許를 早期 導入하게 되자 관련업계는 무척 당황하고 있다.

국내 精密化學업계에서는 그 동안 物質特許制度導入의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의 技術開發 수준과 수용태세미비 등을 들어 실시시기와 방법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누차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새로운 制度, 특히 物質特許와 같이 全產業에 걸쳐 광범위하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制度의 導入·실시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물론 技術·經濟·社會的 측면과 시행상의 문제에 대한 사전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것이다.

物質特許制度導入이 국내 精密化學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해 정부와 관련업계는 크게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物質特許가 인정된다하더라도 실질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90年代 중반이후 부터이며 로열티 추가부담도 醫藥品의 경우 年間 1천만 달러 정도의 가벼운 부담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生産額을 95年度 기준으로 4조 7백 85억원으로 추정(85年은 1조 5천 7백 27억원)하고 원료액 비율 16%, 수입원료비율 50%, 特許대상비율 30%, 로열티부담률

物質特許制度의 導入으로 醫藥·農藥·染料·香料 食品 및 기타 添加劑 등 해당업계가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이다.

電子·機械 등 대부분의 업계가 치열한 국제경쟁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特許法上 상대적으로 많은 保護를 받아왔던 이들 업계는 이 制度의 導入으로 온실을 벗어나 자연상태의 경쟁에 돌입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80년부터 美측에서 산발적으로 거론돼온 이 制度의 導入에 대해 정부는 필요성은 인정하나時機

10%로 잡아 계산한 것이다.

또 先進國企業에의 技術예속문제는 特許權者의 技術 이전회피, 국내생산기피 등 권리남용 때는 강제실시권 발동으로 제재가 가능하며 이 制度導入을 계기로 노력하면 先進國企業과의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中小企業문제는 精密化學工業이 소규모 시설투자산업이므로 연구지향적인 中小企業육성이 가능하며 일정부분의 特化로 비교우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物質特許制度導入으로 최근 일기 시작한 관련산업의 研究開發活動을 크게 위축시킬뿐만 아니라 그 결과 상당기간 先進國에의 技術의존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新物質이나 新藥개발은 5천만~8천만달러의 엄청난 研究費와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成功率이 1만분의 1 정도로 극히 희박한 현실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新物質이나 新藥을 開發해 본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가 物質特許制度를 導入하게 되면 상당기간 先進國 技術에의 의존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先進國企業들의 원료소비시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

對備한 우리의 姿勢

韓·美通商협상 結果를 보고



申 東 植
〈本會 總務部長〉

尙早라고 대응해 왔으며, 업계도 원칙론상 언젠가는 導入돼야 하나 먼후일의 일로 생각, 심각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美國의 경제상태가 어려워지면서 保護主義가 강화돼 지난 해 美國이 通商法 301條를 발동하는 등 태도가 강경해짐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年末 정부는 주무부처 및 관계장관회의에서 87年 하반기에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검토와 4회에 걸친 對美협상을 통해 지난 5月 1日자로 特許法 改正案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다.

다는 것이다.

특히 特許權의 완전한 保護를 통한 기술적 파급효과 측면에서도 국내에 登錄된 特許의 90%가 外國人 소유이며 이들 外國人 特許의 실시율 또한 5~10%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技術이전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관련업계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物質特許制度 導入으로 결정적 타격을 입게된 精密化學업계는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자구책강구에 주력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 시급히 보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新技術研究開發投資에 따른 금융조세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즉, 外國인들이 국내 物質特許를 받아 개발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試驗센터를 빠른 시일내에 設立키로 하고 소 요자료를 정부예산으로 확보키로 하는등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관련 產業界에서도 外國의 同種업체에서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特許出願을 하는지? 技術開發의 主力方向이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해 本會 등 민간 16개 단체는 공동결의문을 채택, 對정부 건의에 나서는 등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韓·美경제관계는 이번 通商懸案의 一括妥結로 새로운 局面에 접어들었다.

이미 양국 정부가 合意한 이상 그 妥結내용에 대해 曰可曰否할 階梯에 있지는 않으나 우리는 이번 妥結이 우리 輸出의 최대시장이 돼온 美國의 對韓通商압력을 解消하고 우리상품의 對美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실로 기대해 본다. 〈筆者 註〉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지? 를 면밀히 파악하는등 特許專擔部署의 活動을 강화하고 自社의 技術開發방향을 검토 수립하는 技術開發政策室과 같은 技術情報 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하겠다.

또한 既存物質에 대한 진보된 製法研究는 계속하되 新物質 開發研究도 병행하면서 新物質에 대한 外國技術의 제휴와 技術開發투자를 확대하여 物質特許權者와의 교섭력을 강화시켜야 하겠다.

또 技術先導업체는 앞장서서 新物質開發體制를 정립해 나가는 한편 品質向上·經營合理化에 의한 原價節減 등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은 힘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80年代 초부터 商品의 輸入自由化幅을 넓혀나갔을 때에도 처음에는 해당 產業界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이를 契機로 정부와 產業界가 합심노력한 결과 우리 商品의 品質水準도 크게 向上되었으며 輸出增대에도 크게 보탬이 되게끔 현명하게 대응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物質特許制度의 導入도 이를 契機로 우리 產業界가 技術開發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 또한 우리나라 精密化學工業 발전을 위한 도약의 전기가 될 것으로 굳게 믿는 바이다. (☺)